

의안번호	제448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1월 31일 (제317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3년 1월 14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 안 번 호	448
------------	-----

제출연월일 2013. 1. 14.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1. 제안 사유

-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적 지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개정(2010. 5. 3 공포·시행)하여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원을 구성코자 함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함 (안 제3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위원은 조합원(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 (안 제6조 제2항).

3. 조합규약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련법규 발췌 : 별첨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라. 기타 : 해당 없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를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조합회의는 19인의 위원으로”를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u>울산광역시</u>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u>울산광역시</u>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조합회의는 <u>19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3. 생략	② 조합회의는 <u>20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3.(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預置金)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제20조(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8>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2.8]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2.8>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목개정 2010.2.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법 제17조의2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용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4(용자관리계정의 재원)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용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본조신설 2010.2.8]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2010.2.8>

②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개정2010.2.8>

[제목개정 2010.2.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2010.2.8>

②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2010.2.8>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0.2.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
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
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
할 수 있다.<개정 2010.2.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
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0.2.8]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
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
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0.2.8>
[제목개정 2010.2.8]

부칙 <제22024호, 2010.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

협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59조의5(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